

[서식 예] 물품대금청구의 소(화훼 도매대금)

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물품대금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8,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〇〇. 〇〇. 〇〇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원고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번지에서 화훼농장을 경영하는 자이고, 피고



는 화훼생산자들로부터 화훼를 매수하여 서울 등 도시에 판매하는 자입니다.

- 2. 원고는 20〇〇. 〇. ○.부터 20〇〇. ○○. ○.까지 피고에게 장미 등을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며, 그 대금은 최종 공급일에 정산하여 지급 받기로 하였습니다. 그런데 피고는 20〇〇. ○○. ○○.까지 공급받은 화훼의 대금 8,500,000원을 원고의 여러 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계속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.
- 3.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화훼의 대금 8,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화훼의 최종공급일의 다음날인 20〇〇. 〇〇. 〇〇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거래장부1. 갑 제2호증지불각서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각 2통1. 소장부본1통1. 송달료납부서1통

2000. 0. 0.

위 원고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귀중

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☞소멸시효일람표)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□□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□□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불복절차	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		
및 기 간	・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기 타	·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채권자가 그 손해를 증명할 필요 없이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법정이율에 의하게 되는 것인데(민법 제397조),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 율은 연 6%임(상법 제54조).		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: 민법 제467 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